

勞 動 經 濟 論 集
 第19卷(2), 1996. 12. pp.21~44
 © 韓 國 勞 動 經 濟 學 會

最低生計費 研究 改善內容 및 課題

鄭 寅 樹*

< 目 次 >

I. 序論	III. 生計費 算定過程
II. 最低賃金審議를 위한 生計費 構造 및 算定概要	IV. 生計費 推定에 대한 課題

머 리 말

본 연구는 최저임금심의위(최심위)에서 필자에게 1996. 9~1997. 8. 까지 적용할 최저임금의를 위한 생계비 연구를 위촉하여 연구한 결과를 중심으로 다룬다. 본 논문의 목적은 본 연구가 기존의 연구와는 다른 몇가지 점을 사용했는데 이에 대한 것과 연구과정 중 드러난 몇가지 문제점들을 기록하여 남김으로써 앞으로의 연구자들에게 참고 자료로 하게 함이다. 본 연구는 1995년 12월부터 1996년 4월 동안 진행되었는데 연구과정 중 3차에 걸친 간담회를 관련학계 인사들 및 노총·경총 실무자 및 최심위 관련자들과 나누었다. 본 연구에서는 간담회에서 제시된 문제점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비록 기존의 연구방법을 답습하였으나 몇가지 새로운 방안을 채택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기존의 연구와는 어느 정도 결과가 달라져 생계비 수치가 나오게 되었다.

기존과는 달라진 점은 첫째, 연령그룹에 대한 조정치를 사용했다는 점이다. 최저임금의를 위한 생계비는 18세 정도의 단신근로자의 임금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것인데 기존의

* 韓國勞動研究院 研究委員

연구는 단신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한 수치를 제시하였는바, 단신근로자들도 연령그룹에 따라 소비액 및 임금수준에 많은 차이가 나므로 이들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였다. 둘째, 계산상의 정확성을 기하였다. 본 연구의 방법상 근로자의 소비지출이 로그정규분포를 한다고 가정하고, 최빈계층에 대한 생계비를 구하여 이를 최저임금계층에 대한 생계비를 조정하기 전의 중요 자료로 사용하고 있는데, 최빈값 산정시 통계적으로 로그노멀 분포상의 최빈값에 대한 값 산정을 좀더 정확히 하려 노력하였다. 셋째, 통계청 도시근로자 생계비 자료를 이용하여 최빈계층 생계비를 산출해 낸다. 이때 표본을 가지고 실제를 추정하여야 한다. 기존 연구에서는 표본과 실제 자료를 연결하는 가중치가 무시되어 온 듯하여 이를 수정하였다. 한편, 본 연구 및 기존의 관련연구에서는 생계비 자료를 통계청 자료를 사용하고 있는바, 통계청 생계비 자료 자체가 연구방법상의 가정과 같이 로그정규분포 형태처럼 왼쪽으로 치우쳐져 단봉을 갖고 있는가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 수용한 새로운 방법이거나 종전의 연구에서 연구자에 따라 달리 적용해 온 방법에 대하여는 결론에서 다루었으므로 참고하기 바란다.

본 논문에서는 연구방법을 위주로 다루었다. 식료품비의 산정이나 사회보장비 등의 비소비지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필자의 「1996년 최저임금심의를 위한 생계비 연구」(1996)를 참고하기 바란다. 제I장은 기존연구 및 생계비에 대한 것을 다룬 서론이며, 제II장에서는 최저임금심의를 위한 생계비 구조 및 산정방법, 제III장에서는 생계비 산정 과정, 마지막으로 제IV장은 생계비 추정에 대한 과제를 다루었다.

I. 序 論

1. 최저임금제와 영향률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최저임금 수준을 설정하여 이 이상의 임금을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법적 저임금근로자 보호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86년 12월 31일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였고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되었다.

최저임금제의 목적은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기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하며, 긍정적 효과로는 첫째,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의 완화, 소득분배의 개선에 기여하고, 둘째,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생산성 향상 셋째, 저임금에 기반을 둔 경쟁을 지양하고 경영합리화를 기대한다는 데 있다. 적

용대상은 1988년 도입부터 10인 이상 사업체에 적용하고 있으나 첫째에는 제조업에만 국한하였고 1989년에는 건설업 및 광업이 추가되었으며 1990년부터는 전산업으로 확대되었다. 10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일 경우 근로자 고용형태별 구분은 없다. 즉 상용근로자뿐 아니라 임시, 일용, 파트타임 근로자에게도 적용되고 있다. 적용시기는 1993년까지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었으나, 1994년부터는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하고 9월 1일부터 익년 8월 31일까지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이유는 매년초에 적용되는 최저임금 상승률이 노사간 임금교섭 기준으로 작용하게 되어 최저임금제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다.

수혜대상을 <표 1>에서 보면 1989년의 경우 수혜대상 영향률이 전체 근로자의 10.7% 수준으로 정점을 이룬 적이 있으나 그후 계속 영향률이 줄어들어 1995년 9월부터 1996년 8월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영향률은 1.9%에 불과하다. 이는 최저임금제도 운용에 의하여 득과 실을 따져볼 때 운용으로 인한 비용이 운용에 의하여 영세계층에 대한 국민복지증진보다 더 높지 않을까 우려된다.

평균임금 수준에 대한 최저임금 수준을 비교하면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0.3~0.4 정도에 불과하다. 이는 미국의 경우 비록 비정기적으로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지만 그 목표수치는 0.4~0.5 수준(Ehrenberg and Smith, 1985)임을 감안할 때 높은 수준은 아니다(정인수 참조). 특히 최저생계비를 구성하는 음·식료품 물가가 미국에 비하여 우리나라가 높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 자체는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고 판단된다.

<표 1> 임금수준과 최저임금수준의 비교

구 분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8	1994. 9~1995. 8	1995. 9~1996. 8	
(1) 최저임금 (시급)	462.50	600	690	820	925	1,005	1,085	1,170	1,275	1994년도는 1994. 1~8 적용
(2) 최저임금 (시급)	3,700	4,800	5,520	6,560	7,400	8,040	8,680	9,360	10,200	"
(3) 최저임금 (월환산금)	111,000	144,000	165,600	192,700	209,050	227,130	245,210	264,420	288,150	"
(4) 매월노동정액급여	316,047	374,969	443,829	521,992	596,586	670,093	746,800	787,000 ¹⁾	-	
(5) (3)/(4)*100	35.1	38.4	37.3	36.9	35.6	33.9	32.8	33.6	-	1988~1995. 8 평균 35.45%

주 : 1) 1994년과 1995년 임금수준 평균치임.

자료 : 최저임금심의위원회, 『심의편람』, 1995. 12.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

<표 2>의 최저임금과 거시경제지표의 변동 추이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최저임금 상승률은 1989년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명목노동생산성 증가율 정도에서 결정되었다. 이는 일반근로자의 실제 임금인상률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표 2> 최저임금과 거시경제지표의 변동 추이

	성장률(A)	소비자물가 인상률(B)	(A) + (B)	임금 인상률 ¹⁾	최저임금:시급 (인상율)	명목노동 생산성증가율 ²⁾
1988	12.0	7.1%	19.1	-	462.5원 -	13.2
89	6.9	5.7	12.6	21.1	600원(29.7)	6.9
90	9.5	8.6	18.1	18.8	690원(15.0)	15.7
91	9.1	9.3	18.4	17.5	820원(16.4)	16.0
92	5.1	6.2	11.3	15.2	925원(8.5)	8.8
93	5.8	4.8	10.6	12.2	1,005원(8.6)	8.5
94	8.6	6.2	15.1	12.7	1,085원(7.96) ³⁾	9.8
1995 (94.9~95.8) 기간중 증가율	9.0	4.5	13.5	11.2	1,170원(7.8) ⁴⁾ 1,275원(8.97)	10.9
1989~95	8.3	6.5	14.8	15.5	12.9	11.2
1989~91	8.5	7.9	16.4	19.1	20.4	12.9
1992~95	7.1	5.4	12.6	12.8	10.5	9.5

주 : 1) 매월 노동통계조사 자료에 근거함. 2) 경제활동인구 기준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경상가격)에 근거함. 3) 1994.1.1.~8.31. 적용. 4) 1994.9.1.~95.8.31. 적용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KLI 노동통계』, 1996; 최저임금심의위원회, 『심의편람』, 1995. 12.

<표 3> 적용 연도별 수혜근로자 및 영향률

	적 용 업 종	적용대상 사업체(개)	적용대상 근로자수(명)	수혜근로자 (명)	영향률 (%)
1988	10인 이상 제조업	34,984	2,266,675	94,410	4.2
1989	10인 이상 제조업 광업, 건설업	39,977	3,052,555	327,954	10.7
1990	10인 이상 전산업	78,011	4,386,041	187,405	4.3
1991	10인 이상 전산업	82,923	4,556,075	393,183	8.6
1992	10인 이상 전산업	88,772	4,620,164	391,502	8.5
1993	10인 이상 전산업	98,695	5,045,064	227,519	4.5
1994. 1.8	10인 이상 전산업	103,774	4,916,322	102,312	2.1
'94.9~'95.8	10인 이상 전산업	112,374	4,863,923	103,033	2.1
'95.9~'96.8	10인 이상 전산업	112,374	5,380,697	103,191	1.9

자료 : 최저임금심의위원회, 『최저임금·의결경위』, 1995. 12.; 『심의편람』, 1995. 12.

2. 生計費의 意義

1986년 12월에 제정·공포된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 수준을 정할 때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및 노동생산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4조). 여기에서 생계비란 가계의 단위인 한 가구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 정의되는데, 이는 생계비 파악 방법에 따라 크게 實態生計費와 理論生計費로 나눌 수 있다. 실태생계비란 각 가구가 현실적인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실제로 조사한 것을 말하며, 이에 반하여 이론생계비란 일정한 생활규모(모형)를 설정하여 거기에 필요한 비용을 이론적으로 산정한 것이다.

또한 생계비는 정책 또는 사용 목적에 따라 어떤 생활모형(수준)을 설정하는가에 의하여 금액이 다르게 나타나기 마련인데, 생활모형으로서 표준적인 생활을 취하면 '標準生計費'(Normal Level), 최저생활을 설정하여 산출하면 '最低生計費'(Minimum of Health and Decency Level)가 된다. 이 외에도 생계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으로서 구제 또는 생활보호 없이는 생계가 곤란한 수준인 '被救恤費'(Pauper Level), 그 위의 수준으로 단순히 최저한의 생존에 필요한 수준에 머무는 '最低生存費'(Minimum of Subsistence Level)가 있으며, 가장 높은 수준으로서 건강하게 문화생활을 유지하면서 여유있는 생활수준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인 '愉快生計費'(Health and Decency Level) 등이 있다.¹⁾ 결국 이러한 다섯 가지 수준의 생계비는 그 측정방법에 따라 각각 다시 실태생계비와 이론생계비로 나눌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수준별 생계비는 실제보다는 이론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용이하기 때문에 이를 이론생계비 범주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일반적이다.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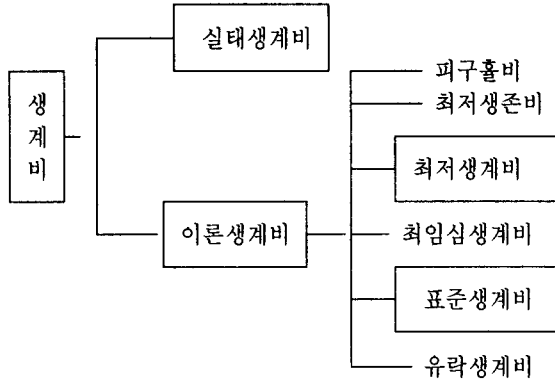
우리나라에서 實態生計費로는 통계청의 「가계조사」(『都市家計年報』로 발행)와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 단신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勤勞者生計費調査」가 있다. 理論生計費로는 한국노총이 임금교섭 기초 자료로 산정해 온 「도시근로자 최저생계비」,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최저임금심의를 위한 참고 자료로 산정해 온 「표준생계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부정기적으로 추계해 온 「최저생계비」가 대표적이며 그외 관련기관 또는 개별연구자들이 추계한 생계비³⁾가 모두 이에 해당한다.

1) 한국노총에서는 임금인상요구지침에서 이른바 생계비 규율로 유락생계비=표준생계비×1.5, 최저생계비=표준생계비×0.8, 최저생존비=표준생계비×0.5로 정한 바 있다(한국노총(1989), p.23.).

2) 본 내용은 한국노동연구원의 그간 매년 계속된 연구에서의 기존 분류에 따르고 있다. 서울대 경제연구소(1987)나 최저임금심의위원회 사무국(1988) 등에서는 이론생계비를 최저생계비와 표준생계비로 나누고 있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한 것이 [그림 1] 이다.

[그림 1] 생계비의 종류



3. 最低賃金審議를 위한 「標準生計費」算出 經過

이와 같이 생계비는 산정 목적과 산정 방법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1988년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표준생계비」가 산정되어 최저임금수준 결정의 참고 자료로 이용되어 왔다.

張鉉俊(1987. 12.)을 비롯한 초기의 「표준생계비」는 일본 인사의 생계비 추정방법에 기초하고 있는데,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이후 노·사·정의 관련단체로부터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어 1988년에는 노·사, 학계 및 관계기관의 전문가로 실무회의를 구성하여 표준생계비를 산정하였다(최저임금심의위원회 사무국, 「근로자표준생계비 보고서」, 1988. 11.).

1989년까지 최저임금심의위원회의 생계비분과위원회는 최저임금수준산정의 참고 자료로 이용되는 생계비로 標準生計費, 韓國勞總의 (최저임금을 위한)最低生計費 및 最審委 事務局에서 조사하는 單身勤勞者 實態生計費를 활용하였다. 그러나 표준생계비와 한국노총의 생계비가 같은 이론생계비임에도 불구하고 수치상으로 큰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생계비전문위원회는 최심위 산하 연구위원회에 생계비 단일화 방안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연구위원회 위원 중 노·사·공익대표 각 1인으로 구성된 실무소위는 여러번에 걸친 논의의 결과 1990년 2월 생계비 추정방식은 현행 표준생계비 방식으로 하며, 생계비

3) 전국섬유노동조합의 「최저생계비」(1969) 이후 노동부, 보건사회부 등에서 목적에 따라 최저생계비를 산정했으며, 이외로 徐相穆(1981), 尹錫範(1983), 李重熙(1986), 張鉉俊(1986 및 1987), 서울대경제연구소(1987) 등이 있다.

산정기관은 한국노동연구원으로 하되 생계비의 명칭은 ‘최저임금심을 위한 생계비(최임심생계비로 칭함)’ 로 하고 생계비 산출과정에 노·사가 수시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도록 한다는 데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위원회 실무소위의 합의사항을 최심위 생계비 전문위원회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1989년과 1990년에는 각각 다음해의 최저임금수준 산정을 위한 표준생계비의 산정을 한국노동연구원에 의뢰하여 연구를 진행시켰다(朴英凡·曹尤鉉, 『標準生計費 算定에 관한 研究』, 한국노동연구원, 1989. 8 및 朴英凡, 『1991年 最低賃金審議를 위한 生計費算定에 관한 研究』, 한국노동연구원, 1990. 8 ; 강순희, 『최저임금심을 위한 표준생계비』, 1995.). 그러나 1992년도부터는 원시 자료 이용상의 애로로 인하여 표준생계비의 산출이 일시 중단되었다가 1995년부터 재개되었다.

참고로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연구되어 온 생계비를 [그림 1]과 같은 방법으로 분류한다면 표준생계비라 하기엔 거리가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최저임금심을 위하여 참고 자료로 산정해 온 「표준생계비」는 실제 계산시 표준가구(최빈계층)를 대상으로 하지만 이 계층의 소비지출액을 또다시 최빈값/평균값으로 조정하여 하향시킨 것이므로 「표준생계비」라 이름 붙이기는 곤란하고 최저임금심을 위한 생계비(최임심생계비)라 해야 그 내용상 타당하다.⁴⁾ 따라서 ‘표준’이라는 부분은 삭제시키고 본 연구의 제목을 「1996년 최저임금심을 위한 생계비 연구」(최임심 생계비 연구)로 하였다.

II. 最低賃金審議를 위한 生計費 構造 및 算定概要

1. 最低賃金審議를 위한 ‘最低賃金審議를 위한 生計費’의 定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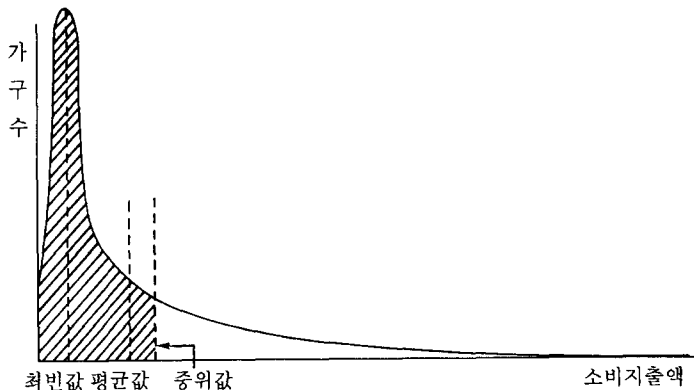
최저임금심을 위한 생계비는 최빈계층의 표준적인 생활을 영위하기에 필요한 정도의 생계비를 의미한다. 그런데 이러한 표준적인 생활수준의 기준을 무엇으로 해야 할지에 대하여는 생계비산정 목적과 방법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국민생활의 생계비의 실태조사를 통해 가계지출의 표준이 된다고 판단되는 계층을 추출하여, 이 표준적인 근로자 세대의 평균적인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생계비로 정의된다.

4) 본 연구를 위해 세 차례의 실무간담회를 개최하였는바 최심위 관계자 및 조우현 교수도 이런 점과 함께 ‘표준생계비’와 ‘최저임금’의 두 가지 개념이 서로 달라 개념 혼동을 야기시키므로 「최저임금심을 위한 한국노동연구원 생계비 연구」라는 제목이 합당하다는 의견 제시가 있었다.

최저임금심의위원회 실무회의에서는 1988년 5~7월간의 공동작업을 통하여 통계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감안하여 '최저임금심의를 위한 생계비'로서 최빈값 계층을 중심으로 한 생계비를 제시한 바 있다. 즉 여기서는 가장 빈도수가 많은 계층이 '표준이 된다고 판단되는 계층'으로 선정된 것으로서 이들의 생계비를 이용하여 산출된 것을 표준생계비로 정의하고 여기에 최빈값과 평균값 간의 조정치를 감안한 소비지출액을 최저임금심의를 위한 「최임심을 위한 생계비」로 사용되고 있다. 이는 국민생활실태(「가계조사」)를 통해 구한 가계지출 표준계층의 최저생계비로서 결국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참고 자료로서의 근로자가구의 생계비를 대표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생계비의 분포는 [그림 2]와 같이 왼쪽으로 치우친 모양을 나타낸다. 경제학에서는 소득 및 소비의 통계적 도수분포는 극단으로 왼쪽으로 치우친 형태를 가진다고 보며, 통계적 처리에서는 로그노멀 분포(lognormal distribution)을 가정한다. 이러한 분포에서는 최빈값이 중요한 분석통계로 등장한다. 산출평균치나 중위값은 고액 또는 저액 지출자인 극단의 영향을 받는 데 비해서, 최빈값은 안정적이어서 주어진 계층분포의 대표성도 높고 일반상식에도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빈값이 평균값보다 높게 나타나므로 최빈값에 대한 최저임금 연구에서는 최빈값 주위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할 뿐만 아니라 분석시에 최빈값을 평균값으로 나눈 값을 조정치를 각각의 소비지출액에 곱하여 이를 최저임금계층 소비지출액으로 가정하여 사용한다.

[그림 2]



(최고치-최저치) × 0.001 → 54% 누적도수

(최고치-최저치) × 0.052 → 90% 누적도수

최고치 22,744,790원, 최저치 86,350원, 누적도수 34,240명

본 연구에서 표준생계비 계산을 위하여 주로 사용하는 자료는 통계청의 도시가계 자료 인바 1995년의 소비지출액을 최고치와 최저치를 1000분위하여 누적도수분포표를 구한 결과를 보면 0.001 분위에 54%의 누적도수가 나타나고 0.052분위까지 90%의 누적도수가 존재하여 전형적인 로그노멀 분포를 보인다. 최고치 22,744,790원, 최저치 86,350원으로 나타나 극단적인 로그노말분포를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준다.⁵⁾

2. 最低賃金審議를 위한 標準生計費의 構造

최저임금심의를 위한 「표준생계비」(이하 「최임심 표준생계비」 또는 「표준생계비」라 함)는 크게 소비지출과 비소비지출로 분류되며, 소비지출은 다시 식료품비와 비식료품비로 분류된다.

각 생계비 구성항목의 구체적인 내용은 <표 4>에 수록되어 있는데, 표준생계비 산정은 ① 식료품 ② 주거 ③ 광열·수도 ④ 가구·집기 ⑤ 피복·신발 ⑥ 보건·의료 ⑦ 교육·교양 ⑧ 교통·통신 ⑨ 기타 소비지출 및 ⑩ 비소비지출등 10개를 기본단위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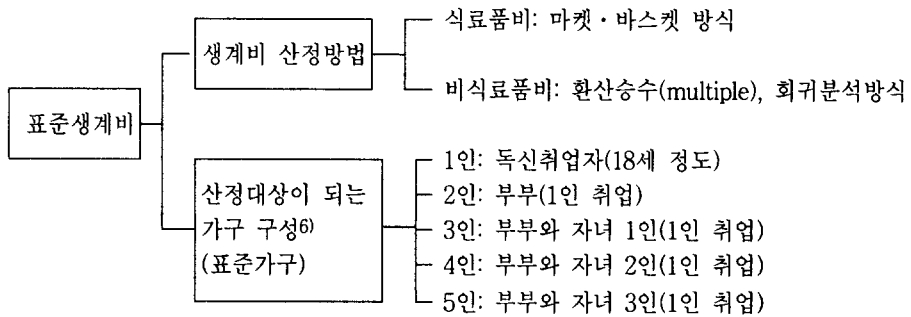
<표 4> 최임심 표준생계비의 구조

생 계 비	소비지출	식료품	2,600Kcal 기준(1995년에 개정됨)
		주 거	월세, 주택설비수리비, 기타주거비 (전세 및 자가평가액)
		광열·수도	전기료, 연료비, 수도료
		가구·집기, 가사용품	일반가구, 가정용 가구, 가사서비스
		피복·신발	외의, 스웨터·셔츠, 내의, 기타 피복, 신발
		보건·의료	의약품, 보건의료용품 기구, 보건의료서비스
		교육·교양오락	교육, 문방구, 교양·오락
		교통·통신	공공교통, 개인교통, 통신
		기 타	담배, 잡비, 이·미용품, 이·미용서비스 장신구
	비소비지출	조 세	소득세, 주민세
		사회보장분담금	의료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
		기 타	쓰레기봉투(오물세)

5) 소비지출에 대한 1000분위 누적도수표는 부록은 참조할 것.

그런데 가구 구성의 유형에 따라 소비지출의 형태에 차이가 나고 이에 따라 생계비수준도 변하기 때문에 사회통념상 표준적인 가구 선정이 필요하다. 여기에서 부부와 자녀만으로 구성되어 있고 가구주만이 취업하고 있는 가구를 표준가구로 하고 이를 대상으로 하여 가구원수별로 생계비를 산정한다.

[그림 3] 표준생계비와 가구 구성



주 : 최저임금심의위원회, 『근로자표준생계비』(8쪽 및 29쪽 참조), 1987. 9.에 나오는 내용임.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 합의된 사항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 당시 최저임금심의위원회 참석자(관계학자·경총·노총 등)에 문의한 결과 모두 그렇게 인정하고 있음.
 자료 : 최저임금심의위원회, 『근로자표준생계비』, 자료, 1987. 9.

6) 자료 : 최저임금심의위원회, 『근로자표준생계비』, 최저임금심의위원회 자료, 1987. 9.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가구원에 대응하는 가구주의 연령을 계산하고 있다.

가 구 원 수	연 령 범 위	평 균 연 령
2 인	28.2 ~ 29.4	28.8
3 인	29.4 ~ 31.7	30.6
4 인	31.7 ~ 33.9	32.8
5 인	33.9 ~ 47.4	40.7

주 : 가구인원 5인의 연령범위의 상한은 第1子가 18세 되는 가구주의 연령 47.4세로 함.
 - 1인 가구의 연령은 18세로 가정. 1인 가구의 평균연령으로 18세와 28.2의 중간치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앞에서 구한 1인 가구의 생계비는 독신 가구의 형성과 동시에 필요한 생계비로 보기 때문임.
 - 여기서 표준 가구를 부부와 자녀만으로 구성된 가구, 더욱이 자녀가 취업하지 않은 가구를 한정하였으므로 第1子가 고교를 졸업하고 취직하게 되면 5인 표준 가구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위와 같이 계산함.

3. 標準生計費 算定 概要

이러한 표준생계비의 산정은 식료품비는 일정한 영양섭취열량(칼로리)을 기초로 '마켓·바스켓'을 작성하여⁷⁾ 구하고, 비식료품비는 도시가계 조사상의 실태생계비(가구조사)의 최빈값을 활용, 회귀분석 및 환산승수(multiple) 방식에 의하여 구한다.

방법 : ① 소비지출 중 식료품비를 제외한 각 비목에 대하여 가구원수별 회귀분석으로 1인 가구 각 비목별로 소비지출 비용을 추정한다. 이때 최빈값을 이용하여 조정된 비용이 비목별 종속변수이다. 최빈계층에 대하여만 샘플로 취한다.

$$Y = a * n^2 + b * n + e ;$$

n : 가구원 수, e : 에러항

자료는 도시가계(통계청):

1993. 4/4 - 1994. 3/4를 1994년 자료로

1994. 4/4 - 1995. 3/4를 1995년 자료로

- ② 식료품비는 국민영양권장량(1995년 기준)을 기준으로 「통계청 식료품비조사」와 「종합물가」 등을 이용하여 산출 → 마켓 바스켓 방식
- ③ 비소비지출 항목은 법령상 실부담액으로 산정된다. 소비지출액을 기준으로 한 표준소득조건표를 이용하여 구한다. → 실제 비소비지출(1990년 노·시간 합의)

소비지출 중 식료품비를 제외한 각 비목계산방법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한다면 다음과 같다.

- ① 각 비목별 2~5인 가구 최빈값을 구한다.
- ② 각 비목별 회귀방정식 $Y_i = a_i n^2 + b_i n + e_i$ 을 이용하여 각 비목별 1인 취업 2, 3, 4, 5인 가족 및 1인 가구소비액을 추정한다(대상 2~6인가구, 최빈값계층).
- ③ 각 비목별 추정된 값을 각 비목별 1인 취업 4인가구 평균소비액으로 나눈 값이 환

7) 마켓·바스켓(market basket)이란 어떤 일정한 생활수준을 영위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소비재및 서비스의 필요한가를 물량으로 나타낸 것이다.

산승수(multiplier)이다. 이때 분자는 각 비목별 최빈값, 분모는 4인가족 평균소비액.

- ④ 비식품품비는 환산승수에 「4인가구 비식품 비목별 평균소비액 환산치」를 곱하는 방식으로 1, 2, 3, 4, 5인 가족의 비식품품비 계산.

이때, 「4인가구 비식품 비목별 평균소비액 환산치」(Y_T)란 「전체가구 평균소비액」(Y_a)을 기준으로 회귀방정식상의 $X=4$ 일 때의 Y 값(Y_4)과

X =평균가구원수일 때의 Y 값(Y_n)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text{즉, } Y_T = Y_a * (Y_4 / Y_n)$$

식품품비 산정의 구체적방법은 다음과 같다.

- ① 국민영양권장량(1인의 권장영양칼로리 2,600Kcal)을 이용한 18세 성인남자의 1일 식단구성은 식품위생연구원의 김초일 박사가 만든 자료에 기초한다. 구체적으로는 18세 성인남자가 중등 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기본열량은 2,500Kcal인데 가정식으로는 그 84%만을 충당하면 된다는 가정 아래⁸⁾ 보건사회부의 「국민영양조사」, 농촌경제연구원의 「식품수급표」 그리고 「식품생산통계」를 이용하여 2,184kcal를 위한 식품구성을 작성한다.

한편 식품품비 가운데 기호식품 및 외식비는 도시가계조사 자료를 기초로 하여 식품품비에 대한 비중 40%를 적용하여 환산한다.

- ② 이 자료를 바탕으로 통계청 소비자물가 자료 및 「종합물가정보」, 「물가자료」 등의 기타 민간 물가자료를 활용하여 1인가구 1일 식품품비를 계산한 후 월간 비용을 30일을 곱해서 계산해 낸다.
- ③ 1인가구 월 식품품비를 도시가계 조사에서 구한 환산승수에 곱하는 방식으로 2, 3, 4, 5인가족의 식품품비를 계산해 낸다.

8) 국민영양조사에 의하면 총식사 중 16% 정도는 가정식이 아닌 식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것은 식품품비 산정에서 설명한다.

Ⅲ. 生計費 算定過程

1. 消費支出

소비지출 관련 표준생계비 비목은 식료품비와 비식료품비로 나누어지는데, 식료품비는 마켓·바스켓방식에 의한 1인가구의 식료품비가, 비식료품 관련 각 비목(주거비 등 8개 비목)은 회귀방정식 추정에 의한 4인가구의 비식료품 관련 비목의 값이 기초 자료로 이용된다. 이와 같이 하여 1인가구 식료품비, 4인가구 비식료품비 관련 각 비목의 값을 기초로, 각 비목별 가구간 상관관계를 규정하는 환산승수를 이용하여 각 가구별 최임심 생계비구성 비목값이 산정된다.

우선 환산승수를 계산하고 다음으로 1인가구 식료품비, 4인가구 비식료품 관련 비목별 환산치를 산정한 후 최종적으로 가구별 소비지출액을 계산하기로 하자.

가. 환산승수

1) 환산승수의 정의

생계비는 일반적으로 생활수준, 생활환경, 가구원수 등에 따라 변화하는데 이 가운데 가구원수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을 제거하기 위하여, 즉 가구원수간 생계비의 상관관계로서 계산되는 것이 이른바 생계비 환산승수(multiplier)이다.

환산승수는 각 가구의 비목별로 추정되는데 비목 i 의 환산승수는

$$\frac{\text{해당가구 } i\text{비목 최빈값 추정치}}{4\text{인가구 } i\text{비목 평균지출액}} \dots\dots\dots(1)$$

로 정의된다. 그런데 이러한 환산승수를 추정하기 위한 자료로는 도시가계조사의 연간 원 자료를 사용한다.⁹⁾

9) 노총·경총·관계학자를 포함한 1차 간담회에서 연간 자료 사용을 제안하였다.(1995년 12월).

2) 4인가구 비목별 평균지출액 산정

1996년도의 최임심 표준생계비를 산정하기 위하여는 우선 1995년도(1994. 4/4 ~ 1995. 3/4)¹⁰⁾ 도시가계조사를 이용하여 4인가구의 비목별 평균지출액이 산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때 소비지출의 구성비목 중 주거비의 평가에 문제가 있는데, 즉 통계청이 발표하는 도시가계조사상에 나타나는 주거비는 순수히 현금 지출과 관계가 되는 월세와 그외의 주택수리비용 등만을 포함하고 있어 기회비용 개념인 전세평가액과 자가평가액을 제외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생계비의 개념과 관련해 생각할 때 전세평가액과 자가평가액을 주거비에 포함시키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보아 이 후로는 두 개의 범주를 모두 계산한 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을 적용하기로 한다.¹¹⁾

3) 가구·비목별 최빈값 추정치

다음으로 환산승수의 분자에 해당하는 각 가구의 비목별 최빈값을 추정하기로 하자. 이는 3단계의 과정을 거쳐 산정된다.

① 제1단계: 각 가구별 최빈값 계층의 설정

각 가구별 최빈값 계층을 설정하기 위하여는 1994년 2/4분기 도시가계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우선 각 가구별 log를 붙인 소비지출총액의 평균(μ)과 분산(σ^2)을 계산하여 최빈값(m)을 구한다.¹²⁾ 기존의 몇몇의 연구에서는 이 부분의 계산에서 경우에 따라 컴퓨터 처리상의 실수가 있었던 듯하다. 예를 들어 $e^{(\mu - \sigma^2)}$ 대신에 $e^{(\mu - \sigma)}$ 를 사용하여 계산하면 1995년 자료의 경우 생계비가 10만원 이상 낮아진다.

- 최빈값(mode)산정

mode = $e^{(\mu - \sigma^2)}$ (참고: lognormal distribution을 $dF/dx = 0$ 하면 구해짐)

$$f(x, \mu, \sigma^2) = \frac{1}{x \sqrt{2\pi\sigma}} \exp\left[-\frac{1}{2\sigma^2}(\log ex - \mu)^2\right] I_{(0, \infty)}(x)$$

$$\frac{df(x, \mu, \sigma^2)}{dx} = -\frac{1}{x^2 \sqrt{2\pi\sigma}} \exp\left[-\frac{1}{2\sigma^2}(\log ex - \mu)^2\right] I_{(0, \infty)}(x)$$

$$+ \frac{1}{x \sqrt{2\pi\sigma}} \exp\left[-\frac{1}{2\sigma^2}(\log ex - \mu)^2\right] I_{(0, \infty)}(x) \cdot \left(-\frac{1}{2\sigma^2}\right) \times (2)x(\log ex - \mu) \cdot \frac{1}{x}$$

10) 이용가능한 최근 자료가 1995년 3/4분기까지이다.

11) 전세평가액과 자가평가액을 제외할 경우 월세를 사는 가구의 주거비가 전세 또는 자가일 경우보다 더 높게 나타날 수 있으며, 전반적으로 주거비가 과소평가되는 문제점이 있다.

12) 이는 최빈값을 추정하기 위하여 소비지출의 분포가 log 정규분포 형태를 지닌다는 가정을 하였기 때문이다.

$$\begin{aligned}
 &= \frac{1}{x\sqrt{2\pi}\sigma} \exp\left[-\frac{1}{2\sigma^2}(\log ex - \mu)^2\right] I_{(0,\infty)}(x) \left[-1 + \left(-\frac{1}{\sigma^2}\right)(\log ex - \mu)\right] \\
 &= 0 \\
 &-\frac{1}{\sigma^2}(\log ex - \mu) = 1 \\
 \log ex - \mu &= -\sigma^2 \\
 \log x &= \mu - \sigma^2 \\
 x &= e^{\mu - \sigma^2} \\
 m_j &= e^{(u - \sigma^2)} \dots\dots\dots(2)
 \end{aligned}$$

여기에서 m = 소비지출 총액의 최빈값
 u = \log (소비지출 총액)의 평균
 σ^2 = \log (소비지출 총액)의 분산
 j = 해당가구(2인, 3인, 4인, 5인)

여기에서 최빈값 계층의 구간을 $m \pm \frac{1}{2}\sigma$ 로 설정되는데 σ^2 가 소비지출 총액의 분산이므로 σ 는 소비지출 총액의 표준편차이다.¹³⁾

그런데 여기에서 구한 소비지출 총액의 최빈값(m)과 최빈값계층의 소비지출 총액의 평균값(\bar{u})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각 가구별 조정계수가 필요한 바, 조정계수는

$$\frac{m_j}{u_j} \dots\dots\dots(3)$$

여기에서 \bar{u} = 최빈값계층의 소비지출총액의 평균값으로 정의된다.

최빈값계층의 가구·비목별 값에 해당가구 조정계수를 곱한 값이 다음 단계 회귀방정식 추정에 사용되는 자료이다. [그림 3]에서도 유추할 수 있듯이 최빈값계층 가구의 소비지출 총액 및 각 비목금액은 표준가구 전체의 경우보다 낮아지게 된다.

② 제2단계: 회귀방정식 추정

그런데 여기에서 기초 자료로 사용하는 도시기계조사 자료는 1인가구를 조사대상에서

13) 이러한 최빈값 계층구간이 소득계층별 소비지출 형태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를 검토한 결과 $m \pm \frac{1}{2}\sigma$ 는 대체로 1,000가구 이상을 표본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1993년의 경우 이러한 최빈값계층은 2인가구 205가구, 3인가구 385가구, 4인가구 538가구, 5인가구 142가구로 총 1,270가구이다.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추정하기 위하여 전단계에서 구한 2~5인 최빈값계층 자료를 이용해, 각 비목별로 회귀방정식을 추정하여 가구·비목별 최빈값 추정치를 산정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설정된 회귀방정식은 가구원수를 독립변수로 한

$$Y_i = a_i n^2 + b_i n \quad (a_i < 0, b_i > 0) \dots\dots\dots(4)$$

여기에서 Y = 비목별 지출액
 n = 가구원수
 i = 해당비목

로 정의된다.¹⁴⁾

③ 제3단계: 가구·비목별 최빈값 추정치 산정

전단계에서 구한 비목별 회귀방정식을 사용하여 환산승수의 분자에 해당하는 가구·비목별 최빈값 추정치를 구한다.

4) 환산승수의 산출

앞에서 환산승수는

$$\frac{\text{해당가구 } i\text{비목 최빈값 추정치}}{4\text{인가구 } i\text{비목 평균지출액}}$$

으로 정의하였다.

2. 1인가구 18세에 대한 연령 조정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 1987년 9월에 발간한 자료에 의하면 산정대상이 되는 표준가구는 아래와 같다고 명시되어 있다(표 5참조). 이는 최심위가 발족한 1987년의 초창기 내용으로 노·사 모두 동의하고 있는 듯하다. 가구원수별 평균연령도 2인 이상은 28.8~40.7세로 되어 있으나 1인가구는 18세로 정해져 있다(표 6 참조).

14) 회귀방정식을 $Y=an+b$ 라는 1차식에 의해 추정할 수도 있으나 가구원수가 0이면 소비지출도 0이 되어야 하고, 또한 가구원수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지출액은 증가하나 그 증가 속도는 체감할 것이라는 판단하에 2차식을 설정하였으며, 실제 1차식으로 추정해 본 결과 소비지출액이 負(-)의 부호를 갖는 경우가 나타났고 R^2 도 상당히 낮았다. 한편 상수항을 넣은 경우 그렇지 않은 때보다 R^2 값이 낮아 상수항을 넣지 않았다.

<표 5> 산정 대상이 되는 가구

산정대상인 되는 가구구성 (표준가구)	1인 : 독신취업자(18세 정도) 2인 : 부부(1인 취업) 3인 : 부부와 자녀 1인(1인 취업) 4인 : 부부와 자녀 2인(1인 취업) 5인 : 부부와 자녀 3인(1인 취업)
----------------------------	---

자료 : 최저임금심의위원회 『근로자표준생계비』, 1987. 9. 8쪽

<표 6> 가구원수별 평균연령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연령범위	18	28.2~29.4	29.4~31.7	31.7~33.9	33.9~47.4
평균연령	18	28.8	30.6	32.8	40.7

자료 : 최저임금심의위원회, 『근로자표준생계비』, 1987. 9. 29쪽.

1인가구는 18세 단신근로자로 대표되는바 1인가구는 여타 2인 이상 가구와는 연령과 혼인여부에서 특별히 차이가 나는 만큼 ‘최임심생계비’ 계산시 연령 및 단신이라는 요소를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의 방법을 돌이켜 볼 때, 1인가구에 대한 도시가계조사 자료가 원래 통계 조사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2인 이상 가구에 대한 소비지출액을 가구원수를 대상(독립변수)으로 회귀분석하여 1인가구에 대한 추정값을 계산해 내는 관계상 추정된 1인가구 생계비에는 2인 이상 가구의 특성-혼인·연령-을 그대로 지니고 있다고 유추된다. 그럴 경우 2인 이상 가구의 연령평균이 그대로 1인가구에도 반영되고, 2인 이상 가구에서 대부분 혼인한 가구이므로 이러한 특성이 반영된 1인가구 생계비가 계산되어 나온다. 이는 우리가 목표로 하는 1인가구 18세 단신근로자 가구의 생계비와는 차이가 생기게 된다는 것은 쉽게 생각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특성을 조정한 값을 만들어야만 목표에 부합한 값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어떠한 방법을 쓸 것인가가 연구의 대상이 된다. 가장 좋은 방법은 회귀분석시 가구원수만을 독립변수로서 사용하지 말고 연령 및 혼인 여부도 더미(dummy)변수로 추가하여 사용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식 5 참조).

$$Y = n, \text{age}18\sim24, \text{age}25\sim35, \text{age}35\sim55, \text{age}55 \text{ 이상}, \text{married} \dots \dots \dots (5)$$

여기에서 Y = 비목별 지출액

n = 가구원수

age 18~24 등 = 연령그룹
 married = 혼인 여부

이 방법을 사용한다면 좀더 정확한 1인가구 18세 단신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최임심생계비를 구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번 연구의 경우 자료상의 문제가 있다. 자료를 받을 때 연령, 혼인 여부 자료와 각 비목별 소비지출액 및 가구원수에 대한 자료를 각각 분리하여 받은 결과 자료의 통합(merge)에 실무적 어려움¹⁵⁾이 있어서 이러한 방법에 의한 연구는 다음으로 미루었다.

그러므로 이번의 연구에서 연령 조정만 한다면 실제적으로 결혼연령이 25세 이상인 현실을 함께 조정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전체 평균소비액을 단신연령그룹인 18~24세 연령그룹의 소비액과 비교하여 조정하는 방법에 착안하여 조정하였다. 연령 조정의 계산과정은 다음과 같다.

- 전체평균 소비액과 18~24세 연령그룹의 비율은 0.8임. 따라서 0.8을 조정치로 사용함.
- 최빈계층 소비지출, 18~24세/전체연령 평균은
 1995년, 0.802 = (618856)/(771476),
 1994년, 0.793 = (546480)/(689474).

참고로 통계청의 도시가계 자료상에 나타나는 가구원수별 평균연령은 <표 7>과 같다. 유경준(1995)에 의하면 혼인 여부에 따른 순임금격차가 1976년 20%, 1981년 18%, 1986년 15%, 1991년 10% 정도이므로 소득과 소비는 밀접한 正의 함수관계에 있는 만큼 18세 단신근로자에 대한 소비지출 및 최저임금 산정에도 20% 정도의 연령 조정치 사용은 무리가 없다고 본다.

<표 7> 가구원수별 평균연령

	평 균	2인	3인	4인	5인	6인이상
1994	38.7	36.7	36.9	39.2	41.6	42.7
1995	39.3	37.4	38.3	39.6	41.2	42.9

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연보」, 각년도.

15) 원자료 사용에 약간의 불편은 있다. 선정된 필요변수를 한꺼번에 받았으면 한다. 통계협회의 컴퓨터 용량 문제로 인하여 필요변수를 그룹별로 다른 파일로 받음으로써 인하여 위에서 언급한 연령별 조정이 불가능하였을 뿐 아니라 여러 가지 데이터 정리 문제가 발생하였다.

2. 최저임금심을 위한 생계비

우선 1995년도의 경우 소비지출과 비소비지출을 합한 가구별 생계비가 <표 8>에 수록되어 있다. 이 표에서 1인가구에 대한 최임심생계비값이 세 가지로 제시되어 있다. 표 중 첫 번째 세로 줄에 나오는 1인가구 생계비는 본 연구원의 기존 방식을 고수한 것이며, 두 번째와 세 번째의 세로 줄에 나오는 1인가구 생계비는 연령 조정을 한 값들이다. 두 번째와 세 번째의 차이는 두 번째에서는 식료품비에도 연령 조정(0.8)을 한 경우의 값이고, 세 번째의 것은 식료품비는 종전대로 하되 소비지출품목 중 그 이외의 것에 연령 조정(0.8)을 한 후에 계산된 생계비이다.

본 연구에서는 1인가구 생계비를 두 번째 세로 줄에 나타나는 값으로 제시한다. 따라서 최임심을 위한 본 연구원의 공식적 1인가구 생계비 액수는 338,217원이 된다. 이는 1995. 9.~1996. 8. 적용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288,150원보다는 17.4% 상승한 값이며,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 1994년 자료에 의한 1년전 대비로는 5.6% 상승한 값이다.

1인가구 생계비에 식료품의 경우에도 연령 조정을 하는 데 대하여는 이의가 제기될 수 있다고 본다. 식료품은 연령 조정을 안한 경우의 값보다 식료품을 연령 조정된 것을 택하는 이유는 전체 소비에서 연령 조정(0.8)값만 알 수 있으므로 식료품에는 조정 않을 경우 과대계산될 우려가 있고, 현실적으로 볼 때 18세 단신근로자가 식비가 많이 든다면 다른 비목에서 소비를 더 줄이게 될 것이라는 논리에서 그렇게 되었다. 이와 같은 구차한 논리는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현재 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도시가계 원자료가 연구의 내용을 커버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현실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비목별 조정된 계산이 불가능하다는 점 때문이다.¹⁶⁾

한편 우리나라 평균 가구원수에 근접한 4인가구의 최임심생계비는 1,385,782원을 제시한다.

16) 참고로 통계청에 자료를 새로이 필요항목을 더 요구하면 응해 주겠지만 올해 최임위 생계비연구에는 시간적 여건으로 어렵다.

<표 8> 가구원수별 생계비

(단위 : 원)

	1인	1인 ¹⁾	1인 ²⁾	2인	3인	4인	5인
소비지출 계	403,363	322,690	351,574	749,965	1,038,145	1,269,418	1,444,057
식료품	144,418	115,534	144,418	265,596	362,982	437,127	488,033
거주비	103,213	82,570	82,570	193,903	271,637	336,415	388,670
광열·수도	14,981	11,985	11,985	27,660	37,937	45,964	51,588
가구·집기	10,304	8,243	8,243	18,571	24,681	28,755	30,792
피복·신발	21,503	17,202	17,202	38,451	50,842	58,769	62,140
보건·의료	14,939	11,951	11,951	26,664	35,175	40,472	42,555
교육·교양	14,005	11,204	11,204	35,212	63,621	99,233	142,048
교통·통신	24,675	19,740	19,740	44,415	59,220	69,231	74,306
기타 소비	55,325	44,260	44,260	99,493	132,050	153,452	163,925
비소비지출계	20,247	15,527	16,957	50,229	80,448	116,364	152,249
조세	0	0	0	12,868	28,101	51,869	79,733
사회보장	19,247	14,527	15,957	35,361	49,347	60,495	68,516
기타비소비	1,000	1,000	1,000	2,000	3,500	5,000	5,000
표준생계비	423,610	338,217	368,531	800,194	1,118,593	1,385,782	1,596,306

주 : 1) 18~24세 연령그룹 소비액과 전체 연령그룹 소비액 비율인 0.8을 사용하여 조정한 수치임.

2) 1인가구의 경우, 1차 산정된 자료 중 식료품은 100% 반영하고 나머지 소비지출은 0.8을 곱하여 조정한 경우.

<표 9> 전년대비 상승률

구분	1인	1인1)	1인2)	4인
1995. 9. ~ 1996. 8. 1인가구 표준생계비 (288,150원)	47.0%	17.4%	27.8%	-
같은 방법 전년대비	5.6%	5.6%	4.2%	8.1%

주 : 1) 18~24세 연령그룹 소비액과 전체 연령그룹 소비액 비율인 0.8을 사용하여 조정한 수치임.

2) 1인가구의 경우, 1차 산정된 자료 중 식료품은 100% 반영하고 나머지 소비지출은 0.8을 곱하여 조정한 경우.

IV. 生計費 推定에 대한 課題

본 연구원에서 1996년 9월~1997년 8월 적용 최저임금심의를 위한 근로자 생계비추정 연구에는 예전과는 달리 3차에 걸친 실무관련자 간담회를 가졌다(1차 : 1995. 12. 18, 2차 : 1996. 3. 15, 3차 : 1996. 4. 26). 실무관련자는 한국노총과 경총의 관계자와 관련 대학교수, 식품위생연구원 관련 박사, 그리고 최저임금심의위원회 실무자를 포함하여 10여명으로 구성되었다. 연구의 진행상 그동안 문제가 되어 왔던 부분에 대한 의견개진과 개선방안에 대한 수렴을 통하여 실제 산정연구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개선방안을 시험적으로 산정하면서 생기는 문제점이나 어려움을 또다시 다음의 간담회에서 의견을 물어보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본 장에서는 연구과정에서 아직도 해소되지 않은 문제점을 중심으로 정리하면서 3차에 걸친 간담회에서 개진되어 온 요점을 간단히 기록한다. 앞으로의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해소해야 할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생계비의 연령그룹별 조정 의 문제이다. 특히 1인가구의 경우 18세 단신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최심위에서 노사간 의견조정(1987년)된 만큼, 이를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이 좀더 개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번의 연구에서는 18~24세 연령그룹의 전체 소비액이 전연령그룹의 그것에 비하여 0.8 정도이므로 이를 추정된 1인가구 소비액에 곱하는 방법으로 조정하였으나 이는 자료상 및 시간제약상의 한계에 의한 것이다. 다음에는 회귀방정식 추정시에 연령그룹에 대한 더미(dummy)변수를 독립변수로 몇 개 더 넣어 추정한다면 이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본다.

둘째, 회귀방정식 추정시에 상수항을 넣어야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현재의 방법과 마찬가지로 상수항 없이 진행해야 하는가가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이 점은 1차에 간담회에서 제기되어 상수항을 가진 회귀분석을 실시해 보니 R^2 값이 상수항을 넣을 경우 0.05~0.26에 불과하지만 상수항을 넣지 않을 경우에는 0.98로 나와 상수항을 넣지 않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그러나 이러한 결론은 잠정적인 것이다. 이 점을 상론한다면 다음과 같다. 우선 상수항이 필요없다는 것은 상수항이란 가구원수에 대한 회귀분석에는 가구원수가 0일 경우이다. 즉 사람이 없는데 어찌 소비액이 있을 수 있는가? 따라서 상수항은 없어야 이론적으로 맞다는 주장이다. 이에 반하여 2~6인가구의 소비액을 대상으로 1인가구의 소비지출을

추정해 내는 것이 목적인데(통계청 도시가계자료를 사용하는데 도시가계조사에는 1인가구에 대한 소비지출은 조사대상이 아니어서 자료가 없음) 어디까지나 자료를 통한 추정이므로 상수항이 있는 것이 전체 회귀식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다면 상수항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주장된다. 그런데 실제 회귀분석시 상수항을 넣어서 추정한 결과 R^2 값이 너무 낮게 나와 설명이 잘 되지 않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상수항 없이 회귀분석하였다. 그러나 상수항이 없는 회귀분석에서는 R^2 값이 정확하지 않은 값(pseudo)이라는 계량경제이론¹⁷⁾이 있는 만큼,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는 두가지 모델에 대한 정확도 검증을 해 볼 필요가 있다. 모델 검증은 간단한 작업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시간제약상 이루지 못하고 학회 논문에서 시도할 요량으로 다음으로 이월하였다.

다음으로 3차에 걸친 간담회에서 제기된 문제 중 해결된 것이거나 해결되지 않았더라도 어느 정도 연구에 반영되었거나, 노사의 의견수렴에 맡겨야 할 점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회귀분석시 가구원수 대상을 2~9인까지 확대하자는 의견은 2~6인으로 하였다. 이유는 본문 내용에서도 설명하였지만(각주 15) 7~9인의 소비지출 자료 수치가 들쭉날쭉하여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간담회에서 합의하여 2~6인으로 제한하였다. 그렇지만 기존의 연구에서는 2~5인이었기 때문에 회귀분석시 자료는 더 많은 양을 사용하게 된 결과를 준다.

둘째, 주거비에 전세·자가추정액을 포함시켰다(각주 11). 전세·자가추정액을 포함시키지 않을 경우 전세·자가자의 주거비가 월세자의 주거비보다 낮은 우스꽝스러운 결과가 야기되며, 포함시켜야만 회귀분석의 R^2 값이 높고 및 t 값이 신뢰성이 있다. 포함시켰다는 정확한 의미는 자료 이용시 도시가계 자료에서 만약 전세자이면 전세추정액을, 자가이면 자가추정액을, 한편 사글세 월세자이면 이에 해당하는 응답주거비를 주거비로 사용한 것이다.

셋째, 외식비의 경우 식료품비 중 몇 %를 외식비로 하여야 할 것인가가 1차 간담회에서 논란이 있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20%로 하였다. 본문 중에 설명(각주 18)이 자세히 나와 있으므로 참고하기 바란다.

넷째, 저축을 생계비에 반영시켜야 하는가의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였다. 본문 중에 왜 제외하였는가 설명되었다(각주 20). 이에 두 가지 점에서 노사간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먼저 최저생계비에 저축을 넣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합리적인 결정인가 하는 점과, 다음으로 만약 포함시킨다면 몇 % 정도가 소비지출 중 저축액

17) Peter Kennedy, *A Guide to Econometrics*, 1985, p26.

인가 그리고 어떤 자료를 사용해야 하는가의 점에서 그렇다.

다음으로 통계청의 도시가계 자료에 대한 간담회에서의 지적을 기록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통계청의 도시가계 자료가 아주 신뢰성이 있으므로 앞으로는 매년 노동연구원에서 최임심생계비를 추정하지 말고 간단히 도시가계에서 나타난 소비지출액을 이용하여 最頻값(mode)을 구한 후 최빈값과 평균치 간의 비율을 조정치로 곱한 값을 최저생계비로 발표해도 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유는 도시가계 자료상의 식료품비값과 식품위생연구원의 자료 및 소비자물가 자료를 이용하여 만들어 낸 물량방식(market basket)에 의한 값이 거의 일치하고 노총에서 작성한 전물량방식 식품비와도 거의 일치한다는 사실, 그리고 각 비목별 소비지출액의 값들이 수준이나 추세치의 변동이 충분히 납득할 만한 값들이라는 점 그리고 비소비지출액도 표준소득조건표를 이용한 추정값과 도시가계 자료상의 비소비지출액이 대동소이하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그동안의 불신은 잘못된 편견이었다는 점을 간담회 위원들이 인정하였다. 이러한 편견은 그동안 原資料를 이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계산상의 어려움으로 인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본 것이다.

參 考 文 獻

- 康淳熙, 『1995년 賃金審議를 위한 標準生計費』, 한국노동연구원, 1995.3.
- 金在源, 「標準生計費의 算定方式과 改善方案」, 『경제연구』, 제14권 제1호, 한양대학교 경제연구소, 1993. 5.
- _____, 『최저임금심의제도의 개선방안』, 한국노동연구원, 1995. 12.
- 金抄逸, 「식료품비 산정방법」, 한국식품위생연구원, 1996.
- 朴英凡, 『1991년 最低賃金審議를 위한 生計費算定에 관한 研究』, 한국노동연구원, 1990. 8.
- 張鉉俊, 『韓國都市部門의 標準生計費』, 한국개발연구원, 1987. 12.
- 鄭寅樹, 「최저임금제의 고용효과 및 운용실태에 대한 기초연구」, 『한국노동연구』, 한국노동연구원, 1996. 5.
- 曺尤鉉, 「'87~'88 標準生計費의 算定과 몇가지 問題點」, 『한국경제연구』 제38집 제1호, 한국경제학회, 1990. 6.
- 尹辰浩, 『도시근로자 생계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1996. 2.
- 통계청, 「소비자물가」, 1995. 12.

- _____, 『도시가계연보』, 1994, 1995.
- _____, 『도시가계』, 조사, 원데이프 1993, 1994, 1995.
- 의료보험업무편람, 『표준보수월액조건표』(영 제181조)
- 국민연금실무편람, 『등급별 표준소득월액표』, 1995.
- 국세청,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세액표』, 1993~1995.
- 물가정보사, 『종합물가정보』, 1994. 12. 및 1995. 12.
- 한국물가협회, 『물가자료』, 1994. 12. 및 1995. 12.
- 최저임금심의위원회, 『노동연구원 표준생계비의 문제점 및 검토의견』, 노동연구원 세미나
에 제출된 자료, 1995. 12.
- 한국노동연구원, 『KLI 노동통계-임금교섭을 위한 활용자료-』, 1996.
- 최저임금심의위원회, 『심의편람』, 1995. 12.
- 최저임금심의위원회, 『최저임금심의 · 의결경위』, 95. 9.~96. 8. 적용
- Ehrenberg, Ronald G. and Robert Smith S., *Modern Labor Economics*, 1994.
- Gyeongjoon Yoo, "An Analysis and Decomposition of Changing Labor Income
Distribution in Korea", August 1995.
- Peter Kennedy, *A Guide to Econometrics*, 1985.